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10년 이상 국내 거주 요건 신설 등 >

■ 안상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556호)

2025. 2.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국내 거주 요건 및 국외 소득·재산 신고의무 신설	3
가. 개정안의 내용	3
나. 검토의견	8
다. 관계 기관 의견	13

I. 개요

1. 안상훈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755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안상훈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5. 1. 15.
- (3) 회 부 일 : 2025. 1. 16.

나. 제안이유

외국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다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면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 대해 기초연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지적되는 상황임.

이에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을 통해 거주요건을 추가하여 국내에서 거주했던 국민들과 그렇지 않은 국민들 사이에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국내에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 기초연금을 지급함(안 제3조).
- 2) 국외 소득·재산 및 국내 거주사실 신고 의무를 부여함(안 제10

조).

3)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범위를 확대함(안 제11조).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국내 거주 요건 및 국외 소득·재산 신고의무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19세 이후 국내에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하여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안 제3조),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때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가 보유한 국외 소득이나 재산을 신고하도록 하며(안 제10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에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 ② (생략) <u><신설></u> ③ · ④ (생략)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19세 이후 국내에 10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u> ④ · 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10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① · ② (생략) <u><신설></u>	제10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 국외</u>

현행	개정안
④ 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의 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략) <신설>	에 소득 또는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중 제3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을 할 때 국내 거주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⑥ 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의 방법·절차,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절차, 제3항에 따른 국외 소득·재산 신고의 내용·방법·절차 및 제4항에 따른 국내 거주사실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조사·질문 등) ① (생략)	제11조(조사·질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조사 또는 기초연금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u>소득과 재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u> 가. <u>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u> 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	② ----- ----- ----- ----- ----- ----- ----- ----- ----- -----. 1. <u>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u> <삭제> <삭제>

현행	개정안
<u>를 받은 과세정보</u> <u>다.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주택 입주권·분양권, 입목재산, 어업권, 양식업권 및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u> <u>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훈급여, 공무원연금, 공무원재해보상급여, 군인연금, 사학연금 및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삭 제></u> <u><삭 제></u> <u>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과세정보</u> <u>3.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주택 입주권·분양권, 입목재산, 어업권, 양식업권 및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u> <u>4.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훈급여, 공무원연금, 공무원재해보상급여, 군인연금, 사학연금 및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u> <u>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해외금융계좌정보</u> <u>6. 출입국 사실 관련 자료 또는 정보</u>

현행	개정안
<u><신 설></u> 2. <u>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u> 가. <u>출입국 사실 관련 자료 또는 정보</u>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 및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이하 “치료감호시설”이라 한다)의 입소 및 출소 사실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다. <u>범죄경력 자료 또는 정보</u> 라. <u>매장, 화장 및 장례 관련 자료 또는 정보</u> 마. <u>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u> 바. <u>가출, 실종 신고 및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자료 또는 정보</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이하 “치료감호시설”이라 한다)의 입소 및 출소 사실 관련 자료 또는 정보 8. <u>범죄경력</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9. <u>매장, 화장 및 장례 관련 자료 또는 정보</u> 10. <u>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u> 11. <u>가출, 실종 신고 및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자료 또는 정보</u>

현행	개정안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초연금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외 보유 소득·재산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우리나라에 영주할 목적으로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고 서약함으로써 국적을 회복한 복수국적자¹⁾(이하 “복수국적자”라 한다)의 경우에도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기초연금 수급자 중 복수국적자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 말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6,454,924명) 가운데 복수국적자는 총 5,699명임(0.09%)임.

□ 그런데, 국내에 계속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영위하여온 일반 노인과 그렇지 아니한 복수국적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내 세수 기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개연성이 있는 복수국적자에게 기초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되어 왔음.

- 이외에도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외 소득이나 외국에 보유한 재산 등의 파악이 쉽지 아니한 측면이 있어, 개별 복수국적자의 실질적인 경제력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요건에 국내 거주 기간

1) 「국적법」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國籍回復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4.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19세 이후 10년 이상 국내 거주)을 신설하고 복수국적자의 국내 거주사실 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일반 노인과 복수국적자 간의 형평을 제고하고, 복수국적자를 포함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가 본인 및 배우자의 국외 소득·재산을 신고하도록 하여 기초연금 수급권 인정 여부 판단에 개별 수급희망자의 실질적인 경제력이 반영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같이 일반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초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스웨덴·아이슬란드(3년), 노르웨이(5년), 호주(10년) 등에서도 기초연금 수급을 위하여 충족하여야 할 최소한의 국내 거주 기간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첫째,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보험제도가 아니며,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등의 경우 그 수급권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복수국적자에게 국내 거주 기간의 요건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둘째, 안 제3조제3항은 기초연금 수급권을 갖지 못하는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19세 이후 국내에 10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으로 정하고 있지만,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규정할 것인지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셋째, 국외의 소득이나 재산을 신고하도록 하거나(안 제10조제3항)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되면(안 제11조제2항제5호) 기초연금 수급희

망자의 실질적인 경제력에 따라 그 수급권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게 되어 제도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국외의 소득 및 재산은 국내의 소득 및 재산과 달리 정확히 신고되지 아니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이를 파악하여 기초연금 지급 중단²⁾, 이미 지급된 기초연금액의 환수³⁾, 과태료 부과⁴⁾ 등의 필요·적절한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을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방안에 대하여도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은 직전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⁵⁾

2) 「기초연금법」

제11조(조사·질문 등)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기초연금 수급권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초연금 지급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기초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3) 「기초연금법」

제19조(기초연금액의 환수)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기초연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기초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경우

4) 「기초연금법」

제31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①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계좌신고의무자”라 한다)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③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 넷째, 안 제10조제4항은 안 제3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을 할 때 ‘국내 거주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인데,

안 제11조제2항제6호 및 제10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등의 국내 거주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출입국 사실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및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법제적 측면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 제11조를 현행과 비교하여볼 때, 개정안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6)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해외금융계좌정보’만을 추가하려는 것인데(안 제11조제2항제5호),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금융회사등”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포함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
 - 가. 금융 및 보험업과 이와 유사한 업종을 하는 금융회사
 - 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
2.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 및 가상자산거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라목의 가상자산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로서 다음 각 목의 계좌를 말한다.
 - 가.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 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국외에 있는 같은 조 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에 개설한 계좌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한 계좌 외의 계좌로서 그 밖에 금융거래 또는 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
3. “해외금융계좌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 가.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 나. 계좌번호, 해외금융회사등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 다. 제53조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요청 대상 자료 또는 정보를 ‘소득·재산’과 ‘인적사항’의 2개 범주로 구분하여 각 목으로 열거하고 있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하나로 하여 개정 대상 조문을 최소화하고 법제의 간결성을 높이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안 제11조제2항제8호의 ‘범죄경력 자료 또는 정보’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서 ‘범죄경력자료’를 정의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3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5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5항 등에서 ‘범죄경력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입법례⁷⁾ 등을 참고하여 ‘범죄경력자료’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정부는 2024년 9월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기초 연금 수급권자의 요건에 ‘19세 이후 5년 이상 국내 거주’를 추가하

7)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 선고유예의 실효

라. 집행유예의 취소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3(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요청을 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78조제2항에 따라 보상을 정지하거나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운전경력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경찰청장에게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고, 국외 소득 및 재산 신고 의무를 신설하는 추진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요건으로 ‘19세 이후 7년 이상 국내 거주’를 신설하려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3602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일부 수용

- 국내 거주요건을 신설하고, 국외 소득·재산 및 국내 거주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기초연금제도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구체적 사항은 국회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다만, 기초연금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국외 소득·재산 신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안 제11조제2항에 대하여는 공감하며 수용한다는 입장임.

□ (국세청) 수정 수용

- 안 제11조제2항제5호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로 수정함으로써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이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하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과세당국에 신고된 해외금융계좌’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경찰청) 수정 수용

- 안 제11조제2항제8호의 ‘범죄경력 자료 또는 정보’는 ‘범죄경력 자료’를 정의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고려하여 ‘범죄경력자료’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10